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개정이유

- 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개선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보다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규모)를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배출일 변경 (안 별표2)
- (현행) 격일 → (개정) 매일(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
- 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규모) 완화 (안 제2조제3호)
- (현행)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 (개정)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 다. 상위법령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5조제2호, 제19조)

3. 조 례 안 : 불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불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불임)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250제곱미터”를 “330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
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
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
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등(제10조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

구분	공동주택(무계단위)	공동주택(부피단위), 단독주택, 다량배출업소 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업소
배출일자	매일(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	좌동
배출시간	배출일 18시부터 24시까지	좌동
배출장소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 기기 설치 장소(주민 불편이 없고 차량 진입이 용이한 곳)	세대주가 지정한 장소나 대문, 업소 앞(차량 진입이 용이한 곳)
수거·운반일	배출일 다음 날(음식물쓰레기가 50%이상 담겨진 전용용기)	배출일 다음 날(납부필증이 부착된 전용용기)

주) 1. 시장이 필요한 경우 수거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2.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기준

가. 60세대당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배출량에 따라 추가설치 가능)
단, 수집·운반처리업체와 상호계약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목	배출요령
-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폐식용유,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과일류 : 견과류 껍데기와 핵과류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생선뼈, 패각류, 복어내장 - 찌꺼기 : 각종 차 류(1회용 포함)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 타 : 돼지기름, 닭기름, 왕겨, 고추대, 옥수수대

■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규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음식점: 사업장 면적	m ²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m ²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1일 kg)
------------------	--------------

⑧ 발생억제계획	
----------	--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kg/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kg/일)	부산물 발생량 (kg/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kg/일)	위탁계약 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제1호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 변경신고 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 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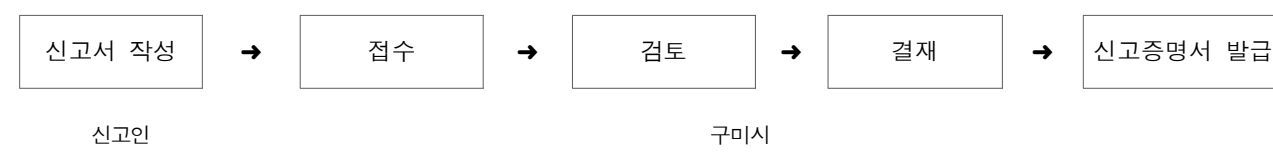
-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칼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칼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칼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 활용내용				③위탁재 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 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재 활용 자	재 활용 방법	위탁 재 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에 의한 부숙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이란 다음과 같다.	3.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 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 업 중 같은 법 제37조제4 항에 따른 면적이 <u>250제곱</u> <u>미터</u> 이상인 휴게음식점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 하는 다방과 빵·떡·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 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나.----- ----- ----- <u>330제곱</u> <u>미터</u> ----- ----- ----- ----- ----- ----- -----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처리방법 등) -----

-----.

1. (현행과 같음)

2.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u>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u> <u>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u> <u>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u> <u>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u>	<u><삭 제></u>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 <u>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u> <u>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u> <u>· 시행령 · 시행규칙 및 조례에</u> <u>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u> <u>서위반행위규제법」 과 구미시</u> <u>재무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u>	<u><삭 제></u>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다. 처리의 경우

3)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 개선(격일→매일)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체계를 격일수거에서 매일수거로 개선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에 소요되는 위탁비(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를 추계함
- 추계기간은 2019년도를 1차년도로 시작하여 향후 5년간 추계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구분							
세출	○ 노무비	248,691	522,251	548,364	575,782	604,571	2,499,659
	○ 경 비	89,890	185,262	190,913	196,736	202,736	865,536
	○ 일반관리비	16,929	35,376	36,964	38,626	40,365	168,260
	○ 이 윤	35,551	74,289	77,624	81,114	84,767	353,345
	소계	391,061	817,178	853,864	892,258	932,440	3,886,800
□ 총 비용		391,061	817,178	853,864	892,258	932,440	3,886,800

- ※ 2019년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7월부터 매일수거시 격일수거대비 증액되는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 2020년부터는 매년 매일수거시 격일수거대비 증액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추계함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391,061	817,178	853,864	892,258	932,440	3,886,800
민 간						
기 타						
합 계	391,061	817,178	853,864	892,258	932,440	3,886,800

5. 부대의견

- 2019년 비용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 결과에 근거한 자료이며, 2020년 이후 세출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재정 소요액도 변동이 생길 수 있음.

6. 작성자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이승은(480-522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위탁비용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수집·운반 환경 및 여건을 조사 및 분석하여 원가를 산정하므로 2019년 원가계산내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추계함.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평균 인상율(5%정도) 적용
 - 경 비 :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 적용(3.05%)
 - 일반관리비 :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5%
 - 이 윤 :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은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소관 실·과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장	지 영 목
	담 당	이 명 희
	담 당 자	이 승 은 (480-5223)